



보도자료

사무총장 박주현 변호사(010-5687-0926)
대변인 유정화 변호사(010-8500-8756)
사무처 02-599-4434 | www.hanbyun.or.kr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한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부당 검찰·징계위 회부, 공문서변조 추미애 등 검찰청법위반, 직권남용, 공문서변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 대한 직권남용 담당 수사검사 직무유기 혐의 고발 및 추미애 구속수사 촉구-

2020. 11. 30.(오전 9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소속 검사를 시켜 부당한 검찰명령,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추미애 무법부 장관을 검찰청법위반, 직권남용,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추미애에 대한 수사를 지체하고 있는 담당검사와 대검 한동수 검찰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추미애가 확인했다는 비위내용은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하거나,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 및 수사를 방해한 사실 등인데, 이러한 혐의들은 모두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하여야 할 긴급성조차 소명되지 않았고, 징계 혐의자에 대한 의견진술의 보장 등 적법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대검찰청 검찰본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의혹'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수사 정보담당관실 전격 압수수색하였다. 2020. 11. 24. 저녁 6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를 발표했고, 이때 처음으로 '재판부 사찰'의혹이 언급되었음을 고려하면, 검찰본부와 법무부의 공무상 비밀누설의 정황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조남관 대검차장의 결제조차 패싱하며 영장을 집행한 것 역시 대검 전결규정을 위배하며 저지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추미애는 총장을 건너뛰고 대검 검찰부에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청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

추미애 등은 부당한 직권남용을 행사하면서 이정화 검사의 '판사 사찰 의혹은 죄가 안된다'는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문서변조에 해당한다.

법치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무법부 장관'으로 대한민국 법치를 앞서서 유린하고 파괴하고 있다. 추미애가 법을 공부했는지, 법조인이었는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이며, 추미애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변을 비롯한 시민단체, 정당 등이 이미 추미애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검사는 고발인조사도 개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우리 한변은 추미애의 위법한 행동에 엄중히 경고하며, 검찰은 검찰조직의 자존심과 명운을 걸고,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서둘러 법치파괴자인 추미애를 구속수사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치의 훼손·파괴를 막아주길 바란다.

2020. 12. 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